의안번호	제 349 호
의 결	년 월 일
연월일	(제 회)

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김성대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7월 4일

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(김성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9 발의연월일 : 2023년 7월 4일

발 의 자: 김성대, 노금식, 최정훈,

오영탁, 이옥규, 이태훈,

임영은

1. 제정 이유

O 도내 등록된 야영장에 대해 도 차원의 육성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 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O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제2조)
- O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O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O 야영대회 개최, 우수야영장 평가·지정, 야영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~제7조)
- O 야영장 정보제공, 사무의 위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9조)
- O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,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

나. 관련부서 협의: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(제외)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야영장 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야영(캠핑)"이란 텐트, 자동차,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.
 - 2. "야영객"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3. "야영장"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.
 - 4. "야영장업"이란 「관광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·교육·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1.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

- 2. 중장기 지원 및 발전 전략
- 3. 야영(캠핑)대회 개최 및 육성
- 4. 야영장 시설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
- 5.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
- 6.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도내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제5조(야영대회 개최) ① 도지사는 야영(캠핑)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 및 인지 도 향상을 위하여 시·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캠핑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,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(캠핑)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우수야영장 평가지정)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위생·안전기준,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,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-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을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.
 -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·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·안전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.
- 제7조(야영 교육) ① 도지사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학교 또는 야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8조(야영장 정보 제공) 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, 시설 현황, 비용,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·인터넷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·글램핑·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·활용할 수 있다.
- 제9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제5조, 제7조, 제8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.
- 제10조(안전점검 실시) 도지사는 매년 시·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안전기준 미달 또는 그 밖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관광진흥법

제3조(관광사업의 종류)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~ 2. (생략)
- 3. 관광객 이용시설업 :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

가. ~ 나. (생략)

다. 야영장업: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(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)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
(이하 생략)

제4조(등록)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
□ 관광진흥법 시행령

- 제2조(관광사업의 종류) ① ① 「관광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
 - 1. ~ 2. (생략)
 - 3.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

가. ~ 나. (생략)

다. 야영장업

1) 일반야영장업: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
2) 자동차야영장업: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 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 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O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